



# 2022년 개정된 의료법규 자료집

9월 개정 / 2023년 1월 시행 반영



M E D I C I N E L A W

# Contents

• 국민건강증진법 .....	3
• 지역보건법 .....	4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.....	5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.....	11
• 검역법 .....	14
• 혈액관리법 .....	16
• 국민건강보험법 .....	18
•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.....	21

**국민건강증진법**

<p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<b>제6조의5(건강도시의 조성 등)</b></p> <p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·개선하는 도시(이하 “건강도시”라 한다)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<p><b>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~13. (생략)</p> <p>14. 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<b>대합실·승강장</b>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</p> <p>15.~26. (생략)</p> <p>⑤~⑨ (생략)</p>	<p><b>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~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<b>대기실·승강장</b>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</p> <p>15.~2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~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<p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<b>제19조의2(시·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)</b></p> <p>① 시·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
## 지역보건법

<p><b>제15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)</b>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에 따른다.</p>	<p><b>제15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)</b>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에 따른다. [개정 : 2021.1.12, 시행 : 2022.1.13]</p>
<p><b>제21조(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1조(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·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[개정 : 2021.7.27, 시행 : 2022.1.1]</p>
<p><b>제10조(보건소의 설치)</b></p> <p>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0조(보건소의 설치)</b></p> <p>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1개소의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한다. 다만, 시·군·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[개정 : 2021.8.17, 시행 : 2022.8.18]</p>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<p><b>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</p> <p>1.~11. (생략)</p> <p>1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p> <p>13.~15. (생략)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<b>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</p> <p>1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p> <p>13.~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1.30, 시행 : 2022.12.1]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</p> <p>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“응급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<b>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</b>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.</p> <p>6.~8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</p> <p>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응급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<b>지정된</b>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.</p> <p>6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13조의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b>기본계획</b>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<b>제13조의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b>기본계획</b>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13조의3(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b>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</b>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3조의3(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b>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</b>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·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응급환자 발생 현황,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</li> <li>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</li> <li>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</li> <li>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·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</li> <li>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

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·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.</p> <p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·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</p> <p>3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</p> <p>4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</p> <p>5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시·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·도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</p> <p>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</p> <p>4.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</p> <p>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</p> <p>6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</p> <p>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</p> <p>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시·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·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시·도위원회 및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1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2.~15. (생 략)</p>	<p><b>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2.~15.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②~④ (생략)</p>	<p>②~④ (현행과 같음) 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25조(중앙응급의료센터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“종합병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</p> <p>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5조(중앙응급의료센터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</p> <p>8.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</p> <p>9.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</p> <p>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·관계전문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29조(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,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29조(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,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30조(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</b></p> <p>①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30조(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</b></p> <p>①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“종합병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30조의2(권역외상센터의 지정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b>제30조의2(권역외상센터의 지정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


<p><b>제31조의4(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)</b></p> <p>③ 제1항의 분류·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31조의4(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)</b></p> <p>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,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중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⑤ 제1항의 분류·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31조의5(응급실 출입 제한)</b>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31조의5(응급실 출입 제한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,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35조의2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)</b></p> <p>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<b>그러하지 아니하다.</b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b>제35조의2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)</b></p> <p>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<b>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</b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~6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<b>점검하여야</b> 한다.</p>	<p><b>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6의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<b>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</b> 한다.</p>



<p>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48조의2(수용능력 확인 등)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8조의2(수용능력 확인 등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,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49조(출동 및 처치 기록 등)</b></p> <p>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<b>사항과 처치 내용</b>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(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)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⑤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9조(출동 및 처치 기록 등)</b></p> <p>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<b>사항,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, 처치 내용</b>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(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)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59조의2(업무 검사와 보고 등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,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, 간호기록부,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,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,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,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</p>

	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<p><b>제62조(과태료)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62조(과태료)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12.22]</p>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p><b>제8조의2(감염병병원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(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)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. <b>&lt;후단 신설&gt;</b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<b>제8조의2(감염병병원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(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)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. <b>이 경우 인구 규모,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0.19, 시행 : 2022.4.20]</p>
<p><b>제22조(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)</b></p> <p>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<b>1.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것</b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<b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b>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22조(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)</b></p> <p>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<b>1.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</b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b>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</b></p> <p>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</p> <p>2.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3.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</p> <p>⑤ <b>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,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b></p> <p>[개정 : 2021.10.19, 시행 : 2022.4.20]</p>
<p><b>제23조(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)</b></p> <p>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, 보유,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, 보유,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(이하 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”이라 한다)을 <b>설치·운영하여야</b> 한다.</p> <p>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&lt;후단 신설&gt;</b></p>	<p><b>제23조(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)</b></p> <p>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, 보유,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, 보유,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(이하 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”이라 한다)을 <b>설치·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</b> 한다.</p> <p>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b>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</b> 한다.</p>

<p>③~⑨ (생략)</p>	<p>③~⑨ (현행과 같음) [개정 : 2021.10.19, 시행 : 2022.4.20]</p>
<p><b>제23조의2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)</b></p> <p>①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3조의2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0.19, 시행 : 2022.4.20]</p>
<p><b>제23조의3(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,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3조의3(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, 변경허가,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0.19, 시행 : 2022.4.20]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8조의6(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)</b></p> <p>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·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·분석을 할 수 있다.</p>

	<p>⑤ 제4항에 따라 시험·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3.22]</p>
<p><b>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, 절차,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70조의3(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방역·검사·치료·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(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, 절차,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3.22]</p>
<p><b>제33조의4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</b>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</p> <p>⑥ (생략)</p>	<p><b>제33조의4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</b>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2.1.11, 시행 : 2022.7.12]</p>

## 검역법

<p><b>제12조의2(신고의무 및 조치 등)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, 항만 및 육로의 <b>입국장</b>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⑤ (생 략)</p>	<p><b>제12조의2(신고의무 및 조치 등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, 항만 및 육로의 <b>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</b>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<p><b>제15조(검역조치)</b>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<b>해당 검역소장</b>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<b>검역소장</b>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<b>제15조(검역조치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b>질병관리청장</b>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<b>회항 또는</b>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<p><b>제16조(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)</b></p> <p>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. 다만,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<b>1.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</b></p> <p>2.~5. (생 략)</p> <p>②~⑥ (생 략)</p>	<p><b>제16조(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)</b></p> <p>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. 다만,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<b>1.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</b></p> <p>2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<p><b>제27조(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)</b>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(船籍地)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<b>면제증명서</b>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·⑥ (생 략)</p>	<p><b>제27조(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(船籍地)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<b>면제증명서 및 제2항·제3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</b>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<p><b>제29조(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)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<b>검역소장</b>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한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9조(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b>질병관리청장</b>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한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</p>

**제34조(수수료의 징수)**

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,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·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,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
1의2.·2. (생략)

**제34조(수수료의 징수)**

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,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·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, 제4호의2,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
1의2.·2. (현행과 같음)

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6.22]



## 혈액관리법

<p><b>제2조(정의)</b></p> <p>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8. (생략)</p> <p>9. “헌혈환급예치금”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.</p> <p>10.·11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</p> <p>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“헌혈환급예치금”이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.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3.23, 시행 : 2022.9.24]</p>
<p><b>제12조의2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2조의2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.</p> <p>[개정 : 2021.3.23, 시행 : 2022.9.24]</p>
<p><b>제14조(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)</b></p> <p>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.</p> <p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4조(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)</b></p> <p>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. 다만,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.</p> <p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.</p> <p>[개정 : 2021.3.23, 시행 : 2022.9.24]</p>
<p><b>제15조(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)</b>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</p>	<p><b>제15조(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)</b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</p>

<p>2.~4.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2.~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[개정 : 2021.3.23, 시행 : 2022.9.24]</p>
<p><b>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</b></p> <p>① (생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3.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.·5. (생략) ③ (생략)</p>	<p><b>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상업무 4.·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[개정 : 2021.3.23, 시행 : 2022.9.24]</p>
<p><b>제20조(벌칙)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,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. (생략)</p>	<p><b>제20조(벌칙)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,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. (현행과 같음) [개정 : 2021.3.23, 시행 : 2022.9.24]</p>

**국민건강보험법**

<p><b>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</b>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<b>제63조에 따른</b>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⑥·⑦ (생략)</p>	<p><b>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</b>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<b>제47조의4에 따라</b>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</p>
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47조의4(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)</b></p> <p>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·시설·장비,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p> <p>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·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</p>
<p><b>제48조(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48조(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, 방법, 절차,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</p>
<p><b>제63조(업무 등)</b></p> <p>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b>6.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</b></p> <p><b>7.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b>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② <b>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b></p>	<p><b>제63조(업무 등)</b></p> <p>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6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</b></p> <p><b>7.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</b></p> <p><b>8.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b></p> <p>② <b>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b></p> <p>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</p>
<p><b>제72조(보험료부과점수)</b></p> <p>①·② (생략)</p>	<p><b>제72조(보험료부과점수)</b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**통보할 때**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·정보 중 **대출금액, 그 밖에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·정보(이하 “**금융정보**”라 한다)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**금융정보**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**제96조의2(금융정보의 제공 등)**

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**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**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**금융정보**의 제공을 요청받은 **금융회사등의 장**은 「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**금융정보**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**금융정보**를 제공한 **금융회사등의 장**은 **금융정보**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「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**금융정보**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03조(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)**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.

1.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**제7호**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

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**통보할 때** 「**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신용정보**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·정보 중 **대출금액**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·정보(이하 “**금융정보등**”이라 한다)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**금융정보등**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

**제96조의2(금융정보등의 제공 등)**

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**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제32조 및 「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「**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제2조제6호에 따른 **신용정보집중기관** 또는 **금융회사등**(이하 이 조에서 “**금융기관등**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**금융정보등**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**금융정보등**의 제공을 요청받은 **금융기관등의 장**은 「**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제32조 및 「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**금융정보등**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**금융정보등**을 제공한 **금융기관등의 장**은 **금융정보등**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「**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제32조제7항, 제35조제2항 및 「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**금융정보등**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

**제103조(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)**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.

1.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**제8호**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

2.~4. (생 략)

② (생 략)

2.~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[개정 : 2022.6.10, 시행 : 2022.12.11]

**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**

<p><b>제11조(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(이하 “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~⑦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)</b>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(이하 “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</p> <p>②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[개정 : 2021.12.21, 시행 : 2022.3.22]</p>
---	---